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 : 2017. 1. 18

위원정수 : 7명

재적위원 : 7명

1. 일 시 : 2017. 1. 23(목) 15:00

2. 장 소 : 본 대학 205호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윤현정(위원장, 교원), 구건서(교원), 유상기(직원), 노유나(총학생회장),
오은진(대의원회의장), 장성은(동아리연합회장), 박승식(세무사) 이상 7명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안 건

가. 2016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심사·의결

나. 2017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 및 비등록금) 자금예산서 심사·의결

다. 잉여금처리원칙 심의

6. 회의내용

-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 「대학교육기관 :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
고등교육법 제11조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·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
심사·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」에 따라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음을
설명하고 참석하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.

-위원장은 안건에 들어가 위원들에게 2016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
자금예산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.

-박승식위원은 적립금에 대해 묻자 위원장은 건물감가상각비 5억원을 건축기금으로
적립하고 다른 적립기금은 예금이자만 재적립하고 있다고 설명하다.

-자료를 검토한 위원들은 2016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가 적정하게
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.

-구건서위원이 동의, 유상기위원이 재청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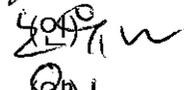
-등록금회계 심사·의결에 이어 위원장은 2016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를
검토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다시 요청하다.

-위원들에게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으로 20,000,000원을 비등록금회계 법인전입금으로
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.

- 이어서 위원들은 참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, 모든 위원은 2016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가 계정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.
- 구건서위원이 동의하고, 장성은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- 이어서 위원장은 2017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를 검토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.
- 자료를 검토한 위원들은 2017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가 올해 1.5% 인상된 등록금 수입 내에서 적정히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.
- 유상기위원이 동의, 오은진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- 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 심사의결을 마친 위원들은 이어서 2017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다.
- 위원장은 비등록금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위원들에게 심사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다.
- 노유나위원이 동의하고 장성은위원이 재청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- 위원장은 오늘 안건 두 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- 위원장은 다음 안건으로 사립학교법 제32조의3(이월금)에 의거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들에게 잉여금처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다.
- 101 -구건서위원은 우리대학은 2017학년도는 1.5%로 인상하였지만 최근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해 매년 이월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고 추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부족예산 편성에 사용하고 장학금 등 직접교육비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노유나위원이 동의하고, 오은진위원이 제청하다.
- 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2017. 1. 23

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위원장	윤현정	
위원	구건서	
	유상기	
	노유나	
	오은진	

장성은 (인)
박승식 (인)

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
2017. 1. 23

송의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

송의여자대학교총장 귀하

2017

4142

2017